

지안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별첨: 독립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제5기 반기 2022년 6월 30일 현재

지안자산운용 주식회사

목 차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에 대한 검토보고서 -----	1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보고서 -----	2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보고서에 대한 주석 -----	3



자기자본 및 최소 영업자본액에 대한 검토보고서

지안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우리는 별첨된 지안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2022년 6월 30일 현재의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을 산정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해당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금융투자업자의 순자본비율 등 검토지침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우리가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이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주회계법인

대표이사 조승호



2022년 8월 12일

이 검토보고서는 검토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반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검토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보고서

제 5 (당기 반기 2022년 6월 30일 현재)

지안자산운용 주식회사

(단위 : 원)

구분	2022년 06월 30일	
	대상 금액	필요자본
1. 자기자본	2,029,252,356	n/a
2. 최소영업자본액(A=Aa+Ab+Ac)	n/a	712,983,049
필요유지자기자본(Aa)	1,000,000,000	700,000,000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Ab)	39,869,879,645	11,960,964
집합투자재산	증권집합투자기구	-
기타 집합투자기구	39,869,879,645	11,960,964
투자일임재산	-	-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Ac)	1,747,053,128	1,022,085
증권계	1,747,053,128	1,022,085
지분증권	해외현지법인 지분	-
관계회사투자지분	-	-
기타 투자목적주식 등	13,627,800	1,022,085
채무증권	거래상대방이 정부, 중앙은행,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AAA 또는 AA+인 경우	-	-
그외의 경우	-	-
집합투자증권	자기운용 집합투자증권	1,733,425,328
타사운용 집합투자증권	-	-
기타증권	-	-
파생상품	-	-
대출채권	-	-
3. 최소영업자본액 2(B=Aa+(Ab+Ac) * 50%)	n/a	706,491,525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보고서에 대한 주석 참조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보고서에 대한 주석

제 5 (당)기 반기 2022 년 6 월 30 일 현재

지안자산운용 주식회사

1.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에 대한 작성지침

(1)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의 산정방법

지안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금융투자업규정상 2종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3-24조의3에 의하여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최소영업자본액에 의한 적기 시정조치

금융투자업규정 제3-26조, 제3-27조 및 제3-28조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등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적기에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2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적기시정조치기준
경영개선권고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
경영개선요구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2에 미달
경영개선명령	자기자본이 필요유지자기자본에 미달

2. 최소영업자본액의 산정

최소영업자본액은 다음 (1),(2),(3)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필요유지자기자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제1호, 제118조의6제1호 및 제271조의3제1호에 따라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단위별로 요구되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70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 고객자산 유형별로 다음의 적립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객자산유형		적립비율
집합투자재산(*1)	증권집합투자기구(*2)	0.02%
	그외의 집합투자기구	0.03%
투자일임재산(*3)		0.03%

*1) 2종 금융투자업자가 운용중인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공제한 순자산총액의 합계액 기준

*2) 법 제229조제1호의 집합투자기구

*3) 2종 금융투자업자가 운용중인 전체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증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투자일임계좌 잔액의 합계액 기준

(3)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 :

가)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은 고유자산 유형별 재무상태표상 금액에 다음의 적립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나) 고유자산 소유형별 재무상태표상 금액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 소유형별 적립 비율을 2배로 가중합니다.

고유자산 유형			적립 비율
대유형	중유형	소유형	
증권	지분증권 ¹⁾	해외현지법인 지분 ²⁾	-
		관계회사투자지분 ³⁾	7.5%
		기타 투자목적주식 등	7.5%
	채무증권	거래상대방이 정부, 중앙은행,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⁴⁾	-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AAA 또는 AA+인 경우 ⁵⁾	1%
		그외의 경우	5%
	집합투자증권	자기운용 집합투자증권	-
		타사운용 집합투자증권	5%
		기타 증권 ¹⁾	7.5%
		대출채권	7.5%
	파생상품 ⁶⁾	10%	

*1) 집합투자증권 제외

*2) 금융투자업규정 제3-65조에 따른 해외점포에 출자한 금액

*3) 해외현지법인을 제외한 관계회사투자지분

*4) 한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발행하거나 전액 지급보증하는 채권, 특별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정부의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공공법인이 발행하거나 전액 지급보증하는 채권

*5)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5의 34호(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산정

*6)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회계처리가 적용되는 파생상품 제외